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10호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21154호, '25.12.2. 개정)」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의 용어가 '신기술·신제품 지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에 사용된 용어도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과 용어 일치화를 위해, 해당 조문에 사용된 '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 (안 - 제1호)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 (참조 : 인증산업진흥과장, 주소 : 충북 음성군 명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인증산업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전화:

043-870-5502, 전자우편: kyungd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6월 3일부터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1. 신기술(NET)·신제품(NEP)인정 평가기관	1. 신기술(NET)·신제품(NEP) <u>지정</u> 평가기관						
가. 수탁기관	가. 수탁기관						
<table><tr><th>구분</th></tr><tr><td>신기술(NET)인정 평가</td></tr><tr><td>신제품(NEP)인정 평가</td></tr></table>	구분	신기술(NET)인정 평가	신제품(NEP)인정 평가	<table><tr><th>구분</th></tr><tr><td>신기술(NET)<u>지정</u> 평가</td></tr><tr><td>신제품(NEP)<u>지정</u> 평가</td></tr></table>	구분	신기술(NET) <u>지정</u> 평가	신제품(NEP) <u>지정</u> 평가
구분							
신기술(NET)인정 평가							
신제품(NEP)인정 평가							
구분							
신기술(NET) <u>지정</u> 평가							
신제품(NEP) <u>지정</u> 평가							
나. 위탁사무의 내용	나. 위탁사무의 내용						
① 신기술(NET) 인정 평가	① 신기술(NET) <u>지정</u> 평가						
○ 신기술인정 신청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 ○ 신기술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 신기술 인정, 인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 신기술 인정,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기술 인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 ○ 신기술 인정, 인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 인정신기술에 대한 사후관리 ○ 신기술 인정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 신기술 인정서 및 신기술적용제품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 평가위원 관리시스템 운영	○ 신기술<u>지정</u> 신청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 ○ 신기술<u>지정</u>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 신기술 <u>지정</u>, <u>지정</u>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 신기술 <u>지정</u>,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기술 <u>지정</u>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 ○ 신기술 <u>지정</u>, <u>지정</u>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 <u>지정</u>신기술에 대한 사후관리 ○ 신기술 <u>지정</u>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 신기술 <u>지정</u>서 및 신기술적용제품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 (현행과 같음)						

○ 평가업무규정 관리 ○ 기타 인정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신제품(NEP) 인정 평가 ○ 신제품 인정 신청의 접수 ○ 신제품 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 신제품 인정 및 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 신제품 인정 및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 ○ 인정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신제품 인정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 신제품 인정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 평가위원 관리시스템 운영 ○ 평가업무규정 관리 ○ 기타 인정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등 위탁기관 (생략)	○ (현행과 같음) ○ 기타 <u>지정</u>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신제품(NEP) <u>지정</u> 평가 ○ 신제품 <u>지정</u> 신청의 접수 ○ 신제품 <u>지정</u>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 신제품 <u>지정</u> 및 <u>지정</u>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 신제품 <u>지정</u> 및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 ○ <u>지정</u>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신제품 <u>지정</u>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 신제품 <u>지정</u>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리 ○ 기타 <u>지정</u>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등 위탁기관 (현행과 같음)
---	--